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| 수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|------|
| 2권 82~82p | 개념,공식-설명 | 수정 전 | ㉔ 업무의 위탁 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. ㉖ 위 ㉕항의 ㉕~㉗ 업무 ㉘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㉙ 손해평가사제도 운용 관련 업무 ㉚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| |
| | | 수정 후 | ㉔ 업무의 위탁 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. ㉖ 위 ㉕항의 ㉕~㉗ 업무 ㉘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㉙ 제11조2에 따른 손해평가사제도 운용 관련 업무 ㉚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| |
| | | 수정사유 | 오류 | |
| 상법(보험편) 248p 번호 : 31 | 문제-본문 | 수정 전 | 31.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| |
| | | 수정 후 | 31.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(가)의 (나)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(다)의 권리를 취득한다. 그러나 (라)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. </div> | |
| | | 수정사유 | 문제 오류 | |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